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약정서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이하 “을”이라 칭한다)이(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수리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 “갑”이 인정하는 대상자에 한함

제 3 조 (수리대상 및 지원범위)

1. 수리대상

- 보장구 :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품 목 : 배터리·타이어·모터 및 부품교체 등

2. 지원범위(연간)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 300천원 지원
- 일반장애인 : 1인 수리비의 1/2범위 내 150천원 지원

※ 지원범위 초과분은 본인부담이며, 출장비(10,000원) 또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됨.

제 4 조 (약정기간)

1. 이 약정의 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2. 차기 약정 전까지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대가의 지급)

1. “갑”이 인정한 대상자가 수리를 받은 후 수리품목을 붙임서식3(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에 기입하고 “을”이 투입한 인력과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한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대가는 “갑”에게 월별 붙임서식2(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사본을 첨부하고, 붙임서식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대가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되 계약자는 월말일 기준 마감하여 익월 5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4. “제3조”에서 명시한 1인이 연간 수리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을”은 금액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원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명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게 초과한 부분을 청구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손해배상)

본약정의 이행중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을”이 하여야 한다.

제 7 조 (약정의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을”이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 위반시
 - 나. “을”이 “갑”에게 1인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한 대가를 3회이상 요구한 때
2. “갑”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어구의 해석 및 기타)

1. 약정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약정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9 조 (약정서)

본 약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갑”, “을”이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6. 1.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77(자양동 77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을” 주 소 :

(인)